

의안번호	제 162 호
의 결 년 월 일	1997년 5 월 24일 (제 63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 출 년 월 일	1997년 5 월 6 일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1997. 5. 6.

제출자 : 보은군수

☐ 개정(제안)이유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외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제곱미터이내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 시장재개발, 건축사업시행자 : 100분의50경감
 -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자 : 5년간 100분의 50 경감.

☐ 사전예고결과

- 기간 : '97.2.27 - 3.18(20일간)
- 방법 : 군보 및 군.읍면 게시판
- 제출의견 : 없 음

☐ 기타참고자료 : 없 음

☐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9조 및 세정 13400 - 41('97.1.15)호

☐ 개정조례(안) 및 신규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사용점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 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 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 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u>부속토지</u>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부분에 한하며, 시지역에서는 993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u>부속토지</u>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현행	개정안
	<u>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전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u>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 단체 · 주택건설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u>사용검사일까지</u>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u>사용승인일까지</u>

현행	개정안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u>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u> <u>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u> <u>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 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생략)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u>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u> <u>토지를</u>사용승인일부터.....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1.승인을 받은 자

현행	개정안
<u>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u> 2. (생략)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u>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u> 4.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3.<u>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u> 4.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u>

현행	개정안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u> <u>1.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u> <u>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u>

제 6 편 제 무

보은군세감면조례

제정 (1995. 1. 18 조례 제1413호)

개정 (1995.10. 20 조례 제1437호)

개정 (1995.12. 30 조례 제1438호)

개정 (1996. 4. 15 조례 제1456호)

개정 (1996. 6. 26 조례 제145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4 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

제 6 편 제 무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1 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 12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동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점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제 6 편 제 무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13 조 【농의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의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 14 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

충 청 북 도

7-360-765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39/전화(0431)220-2312팩2312/전송(F)2319담당:이강근
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39/전화(0431)220-2312팩2312/전송(F)2319담당:이강근

문서번호 세정 13400 - 41
시행일자 '97. 1. 15 (준영구)
(경 유)
수 신 더 01 - 12
참 조 세정(재무)과장

선결	과장	7. 5. 2007	지시	
접수	일자	97. 1. 15	결재	계장
	번호	131		
처리과장 무과			공람	
담당자				

법무부장관

제 목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1. 내무부 세제 13400 - 434('96. 12. 30) 호 및 세제 13400 -15 ('97. 1. 10) 호와 관련 입니다.

2. 농의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당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기 바랍니다.

붙 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내무국장전결

문서처리지기관 : 시군까지

충청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능공단지안에서 능의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등조등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